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소비자원의 위법사실 통보에 대한 회신 의무화〉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41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구 현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헌승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3. 20.
3. 회 부 일 : 2026. 3.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되면 지방자치단체 등 권한 있는 기관에 해당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대하여 조치 여부를 회신할 의무가 없어서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의 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위법행위에 대한 미조치 시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에 조치 여부와 그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위법사실 통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신청사건의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조치를 의뢰한 경우에 관계기관이 30일 이내에 조치여부 및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회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생략)	제56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은 30일 이내에 조치 여부 및 그 결과를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현행법 제56조¹⁾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²⁾함에 있어서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조치를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1) 제56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2) 피해구제 신청(소비자 등) → 사실조사 등 피해구제 → 합의 권고 → 수락: 종료, 불응: 조정신청 등

□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대하여 조치 여부를 회신할 의무가 없어서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의 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위법행위에 대한 미조치 시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

- 최근 3년간 위법사실 통보 및 회신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회신율은 58.9%에 불과함.

<위법사실 통보 및 회신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3	2024	2025
통보 건수	1,271	1,510	1,634
회신 건수 (회신율)	550 (43.3)	935 (61.9)	963 (58.9)

(자료: 한국소비자원)

□ 이에 개정안은 관계기관에 회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에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 권한이 없음을 감안할 때 관계기관의 신속한 조치로 위법행위를 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위법사실에 대한 재조사 및 조치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

간³⁾을 고려했을 때, 30일 이상 소요되거나 기한 내 회신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⁴⁾ 그 사유와 진행상황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관계기관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리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 통보가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소비자원으로 환류되도록 하는 협력 구조를 강화할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관계기관의 부담을 고려하여 회신 기한의 연장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예외규정을 두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경기도는 공공기관인 소비자원의 통보에 회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⁵⁾임.
- 경찰청, 서울시 등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공공기관의 업무 과중 방지 및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⁶⁾임.

3) 공정위의 경우, 2025년 대표조치유형이 과태료인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약 43일

4) 수사 등을 진행 중이어서 사실확정 및 공개가 어려운 경우 등

5) (경기도) 방문판매법 관련 위법사실 통보 115건 중 1건만 과태료 부과 (2025. 9. 기준)

6) 지자체 수정의견

문 의 처
02)6788-5115

수정 의견	관계부처 및 지자체
1) 회신 기한 변경	
조치를 마친 때	경찰청
60일	서울시
90일	경기도(2안)
2) 분쟁조정을 거친 후 통보하도록 규정	서울시
3) 소비자원이 공정위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공정위가 관련 조치를 한 뒤 회신하도록 규정	경기도 과천시